떨스톤 카운티 상급법원(Thurston County Superior Court), 워싱톤 주, 소송사건 목록 번호 11-2-01209-1

**주요: 귀하 또는 가족이 아동이며 메디캐이드가 보조하는 개인 간병서비스를 받았거나 ,귀하는 귀하와 같이 살고 있는 메디캐이드가 보조하는 간병서비스 아동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 간병인일 경우는, 합의금 동의서가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 통지서를 승인했습니다. 이 통지서는 변호사가 하는 간청이 아닙니다.

* *M.T.E. et al., v. Wash. Depr’t of Soc. & Health Servs.(엠티이들 대. 워싱턴 주보건사회부)*는 아동 메디캐이드 수혜자 및 메디캐이드가 보조한 개인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여기에 “아동 평가 규율(Children’s Assessment Rule)” 또는 “규율(Rule)”이라고 부르는 워싱턴 행정법 388-106-0213 때문에 워싱턴 보건사회부(DSHS)를 집단 소송한 케이스입니다. 이 “규율”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워싱턴 상급법원은 그 “규율”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 2015년 10월*M.T.E.(엠티이)*팀은 합의를 봤습니다. 보건사회부(DSHS)는 $4,000,000을 합의금을 제공할 것에 동의해서, (1) “규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 엠피씨(MPC) 서비스를 위한 자비, 그리고 (2) “규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 개인 서비스 제공자가 같이 살고 있는 아동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위한 미납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 떨스톤 카운티 상급법원 (Thurston County Superior Court )은 예심에 제의한 합의금을 승인했습니다. 이 통지서는 귀하의 법적 권리를 설명하기 위해 명령한 것입니다.

|  |
| --- |
| **이 소송에 관한 귀하의 법적 권리** |
| 제의한 합의금 동의서에 소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제의한 합의금 동의서에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Thurston County Courthouse, 2000 Lakeridge Drive SW, Room 204, Olympia, WA 98502에서 2016년 05/20/2016, 9:00 am 개최될 최종 청문회 후에 제의한 합의금 동의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
| 귀하는 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다음과 같은 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1) 귀하 또는가족이 아동으로서 받은엠피씨(MPC) 서비스를 위해서 자비로 납부한 돈의 환불 또는 (2) 아동을 위해서 일한 미납된 엠피씨(MPC) 서비스를 위한 보상. |
| 귀하는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런 소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는 환불이나 보상을 받기 위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의 동일한 청구에 관해서는 보건사회부(DSHS)를 소송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귀하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경우는, 이 집단소송의 한 멤버로 남아있게 됩니다.** 귀하가 집단소송의 멤버로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이 소송과 동일한 법적 청구 건을 별도로 보건사회부(DSHS)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의한 합의금 동의서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는 변호사 비용 및 귀하의 자비에 대한 비용에 책임이 없습니다. |

Если Вы желаете прочитать это извещени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ожалуйста, посетите [website].

如果您想閱讀中文的本通知書, 請前往網站 [website].

Nếu quý vị muốn đọc thông báo này bằng tiếng Việt Nam, xin đến [website].

이 통지서를 한국어로 읽으시기 원할 경우는 [website]을 방문하십시오.

Haddii aad jeclaan lahayd inaad akhrido ogeysiiskan oo Somali ah, fadlan tag [website].

ប្រសិនបើអ្នកចង់អានសេចក្តីជូនដំណឹងនេះជាភាសាខ្មែរ សូមទៅកាន់ [website]។

Si desea leer esta notificación en español, por favor diríjase a [website].

Nếu quý vị muốn đọc thông báo này bằng tiếng Việt Nam, xin đến [website].



**자주 문의하는 질문사항**

**1. 왜 나는 이 통지서를 받게 되었는가?**

귀하는 보건사회부(DSHS)가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다음 두 “집단” 중 하나의 집단 멤버가 **될 것** 같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혜자 집단 합의금***

모든 사람들은 “집단소송 기간” 중: (1) 메디캐이드가 보조하는 간병서비스를 받았으며; (2) 그들의 메디캐이드가 보조하는 간병서비스는 이전의 워싱턴 행정법 388-106-0213을 적용해서 결정되었으며, (3) “집단” 기간 동안의 추가 간병서비스를 위해서 자비로 납부한 사람.

***서비스 제공자 집단 합의금***

모든 사람들은 “집단소송 기간” 중: (1) 이전의 워싱턴 행정법 388-106-0213을 적용해서 간병서비스 시간이 결정된 수혜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건사회부(DSHS)가 승인했으며; (2) 그 달에 그 서비스 수혜자와 같이 살았으며; 그리고 (3) 그 달 동안 보건사회부(DSHS)가 승인한 간병 서비스 금액을 초과한 무급 간병서비스를 제공했다.

여기에 사용된 “집단소송 기간”의 정의는 2005년 7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를 의미한다.

**2. 이 소송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이 소송은 보건사회부(DSHS)가 워싱턴 행정법 388-106-0213, “아동 평가 규율(Children’s Assessment Rule)”을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두 사람이 소송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규율”을 부당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수혜자 집단 합의금” 멤버들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자비로 납부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규율”은 “서비스 제공자 집단 합의금” 멤버들이 부당하게 그들이 같이 살고 있는 아동 메디캐이드 수혜자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도록 요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해결책으로 그들은 워싱턴 법 74.04.080 및 34.05.574에 의거 “합의금 수혜자 집단”은 “아동 평가 규율(Children’s Assessment Rule)”을 처음 적용한 날짜로부터의 과거 서비스에 보상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보건사회부(DSHS)가 “규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면 보조금을 지불해 줬을 무급 서비스를 위한 환불 자격이 있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무효의 “규율”을 적용해서 “합의금 제공자 집단”과의 계약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보건사회부(DSHS)는 모든 주장을 부인합니다.

**3. 집단 소송이란 무엇이며 누가 개입되어 있는가?**

집단 소송에는 한 사람 이상 (“집단 대리인”)이 비슷한 주장이 있는 다른 사람들 모두를 대신해서 소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집단” 또는 “집단 멤버”입니다. 모든 “집단 멤버”들은 “원고”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집단”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예외하고는 “집단”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이 경우, M.T.E., 아동 메디캐이드 수혜자 및 개인 간병서비스 제공자인 Sheryl Wagner(셰릴 와그너)는 “집단 대리인들”입니다. 보건사회부(DSHS)는 “피고”입니다.

**4. 제의한 합의금 동의서는 어떤 것을 제공하는가?**

제안한 합의금 동의서의 주 요건은 하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하는[www.sylaw.com/MTEsettlement](http://www.sylaw.com/MTEsettlement) 에서 동의서 전체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동의서”는 최종 청문회에서 법원이 그 “동의서”를 승인할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 $4,000,000 합의금**

“동의서”는 수혜자 집단 멤버 합의금 및 서비스 제공자 집단 멤버 합의금, 변호사비, 소송비용, 단체교섭 동의서에 연관되는 “집단 기간 동안” 유효한 모든 가능성이 있는 논쟁의 청구서를 위한 지불 및 케이스에 기여한 지급판정이 제출한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서 $4,000,000의 합의금을 제공합니다.

**• *수혜자* 집단 멤버를 위한 청구서 절차**

수혜자 또는 자기자신을 대신해서 혹은 수혜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등, 수혜자 집단 멤버를 위한 합의금은 다음의 4가지 항목을 증명하는 청구서 (이 통지서의 일부로서, 안내 지침서를 동봉함)를 제출 함으로서 합의금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1. 수혜자는 메디캐이드가 보조하는 간병서비스를 받았으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18세 미만이었다;

2. 수혜자는 “집단소송 기간” (2005년 7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동안 보건사회부(DSHS)가 승인한 금액을 초과한 간병서비스를 받았다;

3.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금액 및 간병서비스 날짜 (월/연도) 그리고

4. 그런 간병서비스에 관련해서 자비로 납부한 금액.

청구서는 반드시 소인된 수표, 크레딧 카드 내역서, 첵킹계좌 내역서, 서비스 제공자의 장부, 서비스 제공자가 작성해서 서명한 진술서, 귀하가 납부한 금액 또는 납부해야 할 금액을 증명하는 (진술서에 적어도 간병서비스를 제공한 월/연도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비스 제공자의 고용주가 제공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혜자는 반드시 청구서 관리관 (Claims Administrator)이 보건사회부(DSHS)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 및 지명된 서비스 제공자가 수혜자의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승인해야 합니다. 주요: 승인된 시간과 납부했을 때 청구인의 기본 시간과의 차이 시간만 환불해 줄 것입니다. 기본 시간 및 그룹 분류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워싱턴 행정법을 참조하십시오: 388-106-0125.

**• *서비스 제공자* 집단 멤버를 위한 청구서 수속절차**

서비스 제공자 집단 멤버를 위한 합의금은 다음의 4가지 항목을 증명하는 청구서 (이 통지서의 일부로서, 안내 지침서를 동봉함)를 제출 함으로서 합의금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1. 서비스 제공자는 메디캐이드가 보조하는 수혜자와 같이 살고 있었으며, 그가18세 미만이었을 때 그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했다;

2. 서비스 제공자는 “집단소속 기간” (2005년 7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동안 보건사회부(DSHS)가 승인한 금액을 초과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했다;

3. 승인된 금액을 초과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 날짜 (월/연도) 그리고

4. 그런 서비스를 위한 보조금을 서비스 제공자가 받지 못한 금액.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청구서 관리관(Claims Administrator)이 보건사회부(DSHS)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 및 메디캐이드가 보조하는 간병서비스 수혜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승인해야 합니다. 각 청구서는 100%로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없지 않는 이상, 모든 유효한 서비스 제공자 청구서는

매월 “대리 (Proxy)” 금액으로 $450씩 보상할 것입니다.

청구서 관리관(Claims Administrator)은 청구서에 관련된4 가지 필수항목을 보여 주는지 및 제출한 증빙서류가 청구한 금액을 증명해 주는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청구서 관리관(Claims Administrator)은 서비스 제공자가 보건사회부(DSHS)가 제공한 청구서 기간 동안의 집단 멤버 합의금 가능성이 있는 제공자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지 및 청구한 금액이 중복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입니다.

청구서 관리관(Claims Administrator)은 반드시 청구자자에게 미비한 청구서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집단 변호사는 청구인이 청구서에 대한 문제를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 단체교섭 동의서(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의 합의금액**

제의한 합의금 동의서에는 피고인 “씨비에이 합의금 (CBA Settlement)”이라고 부르는 “서비스 고용인 국제 유니온 “(SEIU)” 775, SEIU 헬쓰캐어 노스웨스트 헬쓰 베네휫 신탁 (“HBT”)과 SEIU 헬쓰캐어노스웨스트 훈련 파트너쉽 (“TP”) 사이의 별도 동의서인 부록 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씨비에이 합의금 (CBA Settlement)”의 합의금에서 피고를 상대로 약간의 청구 가능성을 풀어주는 대신 “(SEIU)” 775는 $115,000를, “HBT”는 $30,000을 그리고 “”TP”는 $5,000을 받게 됩니다.

**• 변호비용, 소송비용 및 청구서 관리관(Claims Administrator) 비용**

제의한 합의금 동의서에 의거, 집단 변호사는 그들의 보통 시간당 가격 및 소송에 소용된 시간 수를 기준해서 합의금에 그들의 변호비용을 적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집단 변호사가 집단을 대신해서 자비로 납부한 돈) 및 청구서 관리비용을 합의금에서 지불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집단 변호사의 변호비용, 소송비용 및 청구서 관리비용들은 검토의 대상이 되며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케이스 분배금 지급판정**

각 집단 대리인 (M.T.E. and Sheryl Wagner Houlihan (엠티이 및 셰릴 왜그너 훌리핸))을 위한 케이스 분배금 지급판정 최고액은 $25,000이며 합의금으로부터 총 $50,000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반드시 케이스 분배금 지급판정을 승인해야 합니다.

**• 합의금이 불충분거나 초과할 경우**

단체교섭 동의서 합의금액, 변호사 비용, 케이스 분배금 지급판정, 소송비용 및 청구서 관리비용을 지불한 후 수혜자 및 서비스 제공자 청구서를 포함한 유효한 청구서를 100%로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없을 경우는, 그들에게 승인된 청구 금액에 비례하는(pro rata) 금액을 지불합니다.

단체교섭 합의금액, 변호사 비용, 케이스 분배금 지급판정, 소송비용, 청구서 관리 비용 및 유효한 모든 청구서를 100%로 지불한 후, 합의금 신탁금에 초과의 합의금이 남아 있을 경우, 그런 초과 합의금은 워싱턴 주로 반납해야 합니다.

**5. 합의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가?**

법원은 제의한 합의금 동의서를 반드시 최종으로 승인해야 하며, 단체 멤버가 공소를 할 경우는 합의금을 지불하기 전에 공소 건들이 최종으로 판결되어야 합니다.

**6. 제의한 합의금 동의서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 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상기 설명한 것과 같이 귀하가 수혜자 집단 합의금 혹은 서비스 제공자 집단 합의금의 멤버일 경우는 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반드시 청구서 관리관(Claims Administrator)이 04/20/2016까지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청구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동봉한 청구서와 안내 지침을 따르십시오. 추가의 청구서는 www.symslaw,com/MTEsettlement에서 내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귀하자신 또는 귀하의 부양가족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포기)**

귀하 또는 귀하의 부양가족을 이 집단에서 제외하기를 원할 경우는, 귀하가 제외되기를 원한다는 진술서 혹은 동봉한 “제외 또는 “포기” 용지”를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귀하의 진술서 또는 포기용지는 반드시 04/20/2016의 날짜가 우편으로 소인돼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우송해야 합니다:

MTE v. Washington DSHS Settlement Administrator

P.O. Box 3266

Portland, OR 97208 - 3266

귀하가 집단 중 하나를 포기할 경우는, 제의한 합의금 동의서가 승인될 경우,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보건사회부(DSHS)가 워싱턴 행정법 388-106-0213, “아동 평가 규율(Children’s Assessment Rule)”을 적용한 것을 상대로 소급혜택 또는 계약을 위반한 손해배상금을 개인 청구서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하에게 그런 청구 건이있다고 믿을 경우는 귀하의 변호사와 상의해 보십시오. 변호사와 공소시효의 관련되는 법률에 관해서도 상담해 보십시오.

**• 귀하는 제의한 합의금 동의서에 소견을 말하거나, 반대하거나 또는 지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의한 합의금 동의서를 위한 최종 청문회를 2016년 05/20/2016, 9:00 am 시에 Thurston County Courthouse, 2000 Lakeridge Drive SW, Room 204, Olympia, WA 98502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귀하는 의무적으로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나 참작해 달라는 귀하의 소견은 의무적으로 발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제의한 합의금 동의서에 관한 모든 소견은 반드시 사전에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자비로 법적 대리인과 참석해도 됩니다. 귀하는 제의한 합의금 동의서에 반대하거나, 소견이 있거나, 공식적으로 지지하거나 또는 집단 변호사들이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청구서 관리 비용 또는 케이스 분배금 지급판정을 받기 위한 요청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에 참석한다는 것을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서면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법원 청문회에 참석하기로 선택할 경우, 귀하의 편지는 다음으로 우송해야 하며 반드시 04/20/2016 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  |
| --- | --- |
| Richard E. Spoonemore and Eleanor Hamburger, Class CounselSirianni Youtz Spoonemore Hamburger999 Third Avenue, Suite 3650Seattle, WA 98104 | John K. McIlhenny, Jr., William McGinty and  Martin Wyckoff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P.O. Box 40124Olympia, WA 98504-0124 |

**7. 상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상세한 정보는 다음의 집단 변호사 웹사잇을 방문하십시오: [www.sylaw.com/MTEsettlement](http://www.sylaw.com/MTEsettlement). 귀하는 또한 보건사회부(DSHS)에 (360) 725-3449로 연락해도 됩니다. 귀하가 개인 서비스 제공자일 경우는 SEIU 775 “멤버 자원 센터”에 1-(866) 371-3200으로 연락해도 됩니다. 귀하는 또한 이 소송 건의 서류 사본을 다음 집단 변호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Richard E. Spoonemore and Eleanor Hamburger, Class Counsel
Sirianni Youtz Spoonemore Hamburger
999 Third Avenue, Suite 3650Seattle, WA 98104
전화번호: (206) 838-3210
이메일: ehamburger@sylaw.com또는rspoonemore@sylaw.com

Если Вы желаете прочитать это извещени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ожалуйста, посетите [website].

如果您想閱讀中文的本通知書, 請前往網站 [website].

Nếu quý vị muốn đọc thông báo này bằng tiếng Việt Nam, xin đến [website].

이 통지서를 한국어로 읽으시기 원할 경우는 [website]을 방문하십시오.

Haddii aad jeclaan lahayd inaad akhrido ogeysiiskan oo Somali ah, fadlan tag [website].

ប្រសិនបើអ្នកចង់អានសេចក្តីជូនដំណឹងនេះជាភាសាខ្មែរ សូមទៅកាន់ [website]។

Si desea leer esta notificación en español, por favor diríjase a [website].

Nếu quý vị muốn đọc thông báo này bằng tiếng Việt Nam, xin đến [website].



**워싱턴 주 떨스톤 카운티 상급법원,
소송사건 번호. 11-2-01209-1**

**제외 또는 “포기” 용지**

**이 용지는 집단 멤버로서 집단 멤버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며 이 소송으로부터의 보상금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만 작성하는 용지입니다.**

성명:

 이름 성

현주소:

 번지,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용지에 서명하는 것은 내가 집단 멤버 통지서를 읽었으며 다음과 같은 것을 인지함을 선언하는 것이다:

1. 나는 나 자신을 이 집단에서 뺍니다;

2. 나는 이 소송에서 재정혜택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3. 나는, 내 변호사와 변호사 없이도, 내가 개인적으로 청구서를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4. 나는 내 청구서는 관련되는 공소시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가 상담하기를 원하는 변호사와 공소시효에 관한 것을 상의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서명: 날짜:

서명한 시 및 주:

**작성한 용지가 2016년** April 20**까지의 우편 소인이 찍히도록 다음으로 우송하십시오:**

M.T.E. v. DSHS Claims Processing
[주소는 청구서 관리관이 제공함]
MTE v. Washington DSHS Settlement Administrator

P.O. Box 3266

Portland, OR 97208 - 3266